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중국 내 종교인의 자의적 구금 중단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09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1. 결의안의 내용 및 취지	6
2. 시온교회 사건 개요 및 국내외 반응	6
3. 관계부처 의견	8
4. 검토의견	9
가. 시온교회 종교인 체포·구금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석방 촉구	9
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보장 촉구	11
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 촉구	13
※ 참고자료	15
1. 시온교회 관련 루비오 美 국무장관 성명	15
2. 국내 선교단체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현황	16
3. 종교사무조례	17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2. 제안일자 : 2025년 11월 28일
3. 회부일자 : 2025년 12월 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교육, 실천, 예배, 의식에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념합니다.

중국 당국은 올 10월초 중국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중국어명 진밍르(金明日), 영어명 에즈라 진(Ezra Ji

n))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래 40여 년간 있었던 최대 규모의 종교인 박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에서 인권의 존중·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서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三自) 애국교회(개신교), 중국 천주교 애국회, 중국 이슬람교 협회, 중국 불교 협회, 중국 도교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종교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삼자(三自) 애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와 중국 천주교 애국회에 속하지 않은 지하교회, 그리고 티베트 불교와 위구르 무슬림의 계속된 수난, 그리고 최근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른 교회내 십자가 제거와 중국공산당 슬로건 게시, 예수상과 성모상의 시진핑 주석 초상화로의 대체 등은 국제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시온교회’와 김명일 목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2월 발효된 개정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686호)에 항의하는 가정교회 목사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같이 동참했다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9년형에 처해진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추우성약(秋雨聖約) 교회’의 왕이(王怡) 목사의 경우,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서 국제법 위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A/HRC/WGAD/2019/36).

올 10월 12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의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지도자의 구금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Detention of Zion House Church Leaders in China), 11월 7일 미국 연방 상원은 중국공산당의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박해, 김명일 목사와 시온교회 지도자의 구금을 규탄하는 결의 제463호(S. RES. 463)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과 중국내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예배를 올리고, 공동체를 위해 공개적으로 사역하며, 두려움 없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공동 기도 청원(BRI and BRICS Solidarity Prayer with Zion Church)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 30여 명의 체포·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중

국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통제, 감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중국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을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

중국 당국은 올 10월 초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중국어명 진밍르(金明日), 영어명 에즈라 진(Ezra Jin))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하였음.

중국은 이미 「중국공산당 규약」 및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를 통하여 주요 종교를 통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종교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계

속해왔으며, 2014년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음.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의 체포·구금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규탄 성명, 미국 연방상원의 규탄 결의가 있었으며,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과 중국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신앙의 자유를 염원하는 공동 기도 청원에 동참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 30여 명의 체포·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촉구하며,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통제, 감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중국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을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내용 및 취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은 중국 당국이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 및 교인을 체포·구금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국 정부에 모든 종교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중단 및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한중 양자 채널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시온교회 사건 개요 및 국내외 반응

중국 내 인권·종교 관련 매체 및 국내 다수 언론보도¹⁾에 따르면, 2025년 10월 초 중국 정부는 베이징·선전·상하이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미등록 ‘지하교회’로 분류된 시온교회(Zion Church) 김명일 목사²⁾와 다른 목회자 및 교인 약 30명을 온라인을 통한 불법정보 유포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1) 중국 내 인권·종교 관련 사안을 다루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 ‘유권망(維權網)’은 2025.10.14.자 보도를 통해 중국 당국이 시온교회 목사 및 교인 약 30여 명을 구금하였다고 전함. 국내 언론에서도 「전국 6개 도시 동시 급습... 中 1만명 시온교회 리더 30명 구금」(국민일보, 2025.10.14.) 등 다수의 관련 보도가 있었음.

2) 김명일(金明日, 중국명 ‘진밍르’, 영어명 ‘Ezra Jin’) 목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동 건으로 체포된 목사 등 관련자 모두 중국 국적자임.

중국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일반적으로 ‘지하교회’로 지칭함.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목사 및 교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동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시온교회는 2007년 창립되어 온라인과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 내 대표적인 비인가 복음주의 가정교회 연합체임. 2025년 10월 현재 중국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³⁾.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명일(金明日, 중국명 ‘진밍르’, 영어명 ‘Ezra Jin’) 목사는 중국 국적의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으로, 중국 내 복음적 가정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임.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목격한 이후 기독교인이 되었음.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베이징 중심으로 시온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약 1만 명의 교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함⁴⁾.

그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 감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양성과 온라인·소그룹 예배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2019년에는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 폐쇄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함⁵⁾.

3) 선교신문, 2025.10.20.

4) 선교신문, 2025.10.20.

5) 선교신문, 2025.10.20.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체포를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한 바 있고⁶⁾,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⁷⁾도 긴급 기도 요청과 함께 중국 정부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⁸⁾했음.

3. 관계부처 의견

외교부는 동 결의안에 대해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은 없는 점, 동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중국측의 반발 및 이에 따른 한·중 관계와 중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중국은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공존 5원칙’⁹⁾을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바, 동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교단체 및 한인 종교단체와의 안전간담회 개최¹⁰⁾, 현지 법령 준수 당부 등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6) 참고자료 1. 시온교회 관련 루비오 美 국무장관 성명 참조

7) 한국세계선교협의회(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는 1990년 설립된 국내 주요 교단 및 선교단체 연합기구로,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조정하고 선교 정책 연구, 선교사 훈련 및 위기관리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출처 : <https://www.kwma.org>)

8)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신앙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KWMA, 구금된 중국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약 30명 석방 위한 기도요청’, 선교신문, 2025.10.20.)

9) ‘평화공존 5원칙’은 1950년대 저우언라이 총리 시절 제시된 중국의 대외관계 기본 원칙으로, ① 주권 상호존중 및 영토보전 ② 상호불가침 ③ 국내문제 불간섭 ④ 호혜평등 ⑤ 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함.

10) [참고자료 2. 국내 선교단체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현황] 참조

4.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중국 내 종교인 구금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관련자 석방 촉구 및 정부의 외교적 대응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총 3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시온교회 종교인 체포·구금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석방 촉구

주문 제1호
대한민국 국회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 30여 명의 체포·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5월 중앙통전업무회의¹¹⁾에서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이에 따라 2018년 2월 개정 「종교사무조례」¹²⁾(국무원령 제686호)를 시행하는 등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오고 있음. 동 조례에

11) 중앙통전업무회의(中央统战工作会议, Central United Front Work Conference):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정책 관련 전략·방향을 결정하고 민족, 종교, 해외 동포 등 다양한 사회 세력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고 수준 회의임.

12)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686호)는 중국의 종교관리 기본 행정법규로서,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활동장소의 설립 및 운영, 종교교직자 관리, 종교활동의 범위 등을 국가의 허가·등록제 하에 두고, 미등록 종교활동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르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적 예배·설교 등 종교활동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온교회 관련 구금 사례도 이러한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문 제1호는 외국 국적자의 구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인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정치적 의미를 가지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동 사안을 국내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외교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보장 촉구

주문 제2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통제, 감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¹³⁾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종교단체와 종교사무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종교사무조례」등 관련 법령을 통해 종교활동을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하에 두고 있음¹⁴⁾.

한편 ‘종교의 중국화’ 정책은 종교의 유래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 및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조례」

1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의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 법률정보 > 외국법률 > 외국법률번역DB 참조)

14) 「종교사무조례」 제21조·제22조는 종교활동장소의 설립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0조·제41조는 등록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제69조는 무단 종교활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3. 종교사무조례 참조)

등을 근거로 미등록 종교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가정교회·지하교회는 국내법상 비인가·미등록 종교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규범 차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¹⁵⁾(2022.11월~현재) 계기 니카라과,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및 종교 기반 차별 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교분리 보장을 별도로 권고한 사례는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문 제2호는 국제인권규범상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중국의 현행 종교정책 및 국내법 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존 UPR 권고 사례와 비교할 때 권고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이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 및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임.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2008년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주기(2008년-2011년), 2주기(2012년-2016년), 3주기(2017년-2021년), 4주기(2023년-2027년)가 진행되고 있음. 권고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는 해당 국가가 결정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출처: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 현황 > 국제사회의 노력 > 유엔 등의 노력 > UPR·SDG).

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 촉구

주문 제3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중국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을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UPR 제도는 국가 간 권고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하는 다자적 절차라는 점에서 일정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제3호는 국제인권 메커니즘 및 양자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특정 국가의 개별 사건을 한중 정상회의 등 최고위급 양자채널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민감성을 수반할 수 있음.

특히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중 ‘국내문제 불간섭’을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동 사안이 양자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외교채널의 선택, 발언 수위 등은 한중 관계 전반, 재외국민 보호, 경제·안보 협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70

Detention of Zion House Church Leaders in China**Press Statement**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October 12, 2025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s recent detention of dozens of leaders of the unregistered house Zion Church in China, including prominent pastor Mingri "Ezra" Jin.

This crackdown further demonstrates how the CCP exercises hostility towards Christians who reject Party interference in their faith and choose to worship at unregistered house churches.

We call on the CCP to immediately release the detained church leaders and to allow all people of faith, including members of house churches, t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한글 번역본

중국 내 시온 하우스 교회 지도자들의 구금
보도자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2025년 10월 12일

미국은 중국 공산당(CCP)이 최근 중국 공산당(CCP)이 중국 내 등록되지 않은 자이언 교회의 수십 명의 지도자들을 구금한 것을 규탄하며, 여기에는 저명한 목사 밉그리 "에즈라" 진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압은 공산당이 당의 신앙 간섭을 거부하고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임을 더욱 보여준다.

우리는 CCP가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정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이 보복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2

국내 선교단체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현황

○ 참석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정부 관계자 및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선교사 해외 파송 관련 단체 관계자

○ 공통 주요내용

- 국제 테러 및 각 지역 정세 동향, 국가별 안전 정보 소개
-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정보 공유 및 신변 안전 주의 당부
- 해외 선교활동 현황·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민관 협업방안에 대한 토의
- 해외 선교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선교사 안전대책 논의
- 선교단체의 위기관리 현황 및 단기 파견 선교팀의 위기관리방안 공유

○ 2022년~2025년 개최 현황

개최일자		참석자 수(명)	비고(공통 주요내용 외, 2025.11.6)
2022	9.1.	30	- 2025.5. 개정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소개 및 중국 국내법 준수 필요성 환기 - 중국의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는 종교활동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비자 취득 필요 안내 - 해외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 제공 해외 안전정보 숙지 및 관할 공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 요청
	12.1.	31	
2023	6.8.	37	
	12.7.	24	
2024	6.20.	26	
	10.17.	26	
2025	4.22.	35	
	11.6.	36	

※ 출처 :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종교사무조례

(국무원령 제686호,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화목과 사회적 조화를 수호하며 종교 사무 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갖는 공민(이하 신앙 공민)이나 갖지 않는 공민(이하 불신앙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신앙 공민과 불신앙 공민, 서로 다른 종교를 갖는 공민은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및 신앙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및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신앙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종교화목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한다.

제5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및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 종교 교직자는 상호 존중 및 평등, 우호의 기초 위에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및 교류 활동 중에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종교 활동장소

제19조

종교 활동장소는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고정된 기타 종교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와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0조

종교 활동장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설립취지가 본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 (2) 현지 신앙 공민이 단체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요가 자주 있을 것
- (3) 종교활동을 주관하려는 종교 교직자나 본 종교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을 것
- (4) 필요한 자금이 있고 자금출처와 경로가 합법적일 것
- (5) 구성이 합리적이고 성(省) 및 향(鄉)의 계획 요구에 부합하고, 주변 기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제21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설립하려는 종교 활동장소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설립을 신청한 지역의 시(市)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설립지역의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정된 기타 종교활동 장소 설립을 신청할 장소에 대해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설립 신청에 대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신청은 인준을 획득한 뒤에야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건립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종교 활동장소가 인준 준비를 거쳐 건설이 완공되면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 사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신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해당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조직 및 규정·제도·건설 등의 상황에 대하여 심사한 뒤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기를 내주고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24조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경우 기존의 등기 관리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기수속을 해야한다.

제5장 종교 교직자

제36조

종교 교직자는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 교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종교 교직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상실하면 종교 교직자 신분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장 종교활동

제40조

신앙 공민의 단체 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장소 내에서 거행되어야 하고, 종교 활동장소, 종교단체 또는 종교학교가 조직하고 종교 교직자나 해당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주관하며, 교리 및 교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41조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장소, 비지정된 임시 활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조직 및 진행할 수 없으며 종교성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 교육훈련을 전개할 수 없고 공민은 국외로 나가 종교 방면의 교육이나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장 법률 책임

제69조

독단적으로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고, 종교 활동장소의 등록 또는 등기증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종교활동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종교대학을 설립하면 종교사무 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금지를 명령한다. 위법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기획 및 건설 등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치안 관리처분을 내린다.

비종교단체, 비종교대학, 비종교 활동장소, 비지정 임시 활동지점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조직하며 종교성 기부를 받으면 종교 사무부서는 공안, 민정, 건설, 교육, 문화, 여행, 문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활동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 및 불법재산이 있으면 위법소득과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으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가정교회·미등록 교회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조문만 제시